

[별표 1] <개정 2008.2.29>

선량한도(제2조제5호관련)

구 분		방사선작업종사자	수시출입자 및 운 반 종 사 자	일 반 인
1. 유효선량한도		연간 50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5년간 100밀리 시버트	연간 12밀리시버트	연간 1밀리시버트
2. 등가선 량한도	수 정 체	연간 150밀리시버트	연간 15밀리시버트	연간 15밀리시버트
	손 · 발 및 피부	연간 500밀리시버트	연간 50밀리시버트	연간 50밀리시버트

1. 위 표에서 "5년간"이라 함은 임의의 특정연도부터 계산하여 매 5년씩의 기간(예 : 1998~2002)을 말한다. 다만, 1998년도 이전의 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밀리시버트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.
3. 방사선작업종사자중 임신이 확인된 자와 일반인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.